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이용진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이용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50
----------	-----

발의연월일 : 2024년 2월 1일

발의자 : 경수현, 김육영, 박영섭, 소형준,
오중균, 이용진, 이호건, 임현주,
정윤주

1. 제안이유

성북구의 안정적인 주택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지원하여 구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과 주거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다. 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과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라. 전세피해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사전협의 : 주택정책과

라. 입법예고 : 2024. 2. 2. ~ 2024. 2.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 및 주거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있는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임대차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주거용 건물을 사용, 수입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 및 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3. “임차인”이란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를 말한다.
4. “전세사기피해자”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요건을 갖춰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말한다.

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위하여 보증기관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보증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주택임대차계약의 체결·이행으로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주택임대차 피해와 분쟁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 등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주택임대차 피해와 분쟁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1. 주택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2. 주택임대차 피해 회복을 위한 법률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
3. 안전한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긴급지원) 구청장은 전세사기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새로운 주택임주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2. 긴급주거지원 주택임주 시 이사비 지원
3. 전세피해 임차인 등에 대한 월세 지원

제7조(전세피해지원센터) ① 구청장은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고 전세사기 피해와 분쟁을 예방하는 등의 지원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전세피해 임차인에 대한 제6조의 지원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수행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안정적인 주택임대차 관계 형성 및 주택임차인 보호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련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5. 5. 31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조례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법 제14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이 조례를 적용한다.